**NICE아이디 제휴서비스 신청서 (㈜가비아씨엔에스)**

|  |  |  |  |  |  |
| --- | --- | --- | --- | --- | --- |
| **회 사 명** |  | | |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업태 / 종목** |  |
| **사 업 장 주 소** |  | | | | |
| **사 이 트 주 소** |  | | | **계약 담당자** |  |
| **전화번호/휴대폰** |  | | | **담당자 이메일** |  |
| **이 용 목 적** | (ex) 홈페이지 본인인증 | | | **기업형태** | 개인( ), 법인( ) |
| **입금계좌** | 816 - 25 - 0036 - 195 [국민은행은행, 예금주: 나이스평가정보㈜] | | | | |
| **서비스 선택**  **(부가세 10%별도)** | 아이핀 | 년선납제 | **( ) 10만원/12개월 기본건수 4,000건/연, 초과건당 28원**  ( ) 30만원/12개월 기본건수 12,000건/연, 초과건당 25원  ( ) 50만원/12개월 기본건수20,000건/연, 초과건당 25원  ( ) 100만원/12개월 제공건수: 50,000건/연, 초과건당 20원 | | |
| 아이핀 | 월후납제 | **( ) 1만원/1개월 기본건수 400건/월, 초과건당 25원**  **( ) 3만원/1개월 기본건수 1,200건/월, 초과건당 25원**  **( ) 5만원/1개월 기본건수 2,000건/월, 초과건당 25원** | | |
|  | 휴대폰본인확인 | 년선납제 | **( ) 118,800원/12개월 기본건수 2,300건/연, 초과건당 54원**  ( ) 50만원/12개월 기본건수 10,000건/연, 초과건당 55원  ( ) 140만원/12개월 기본건수 30,000건/연, 초과건당 50원  ( ) 220만원/12개월 기본건수 50,000건/연, 초과건당 46원 | | |
|  | 휴대폰본인확인 | 6개월선납제 | **( ) 59,400원/6개월 기본건수 1,100건/6개월, 초과건당 65원**  **( ) 234,000원/6개월 기본건수 4,400건/6개월, 초과건당 55원**  **( ) 60만원/6개월 기본건수 12,000건/6개월, 초과건당 55원**  **( ) 120만원/6개월 기본건수 24,000건/6개월, 초과건당 50원** | | |
|  | 휴대폰본인확인 | 월후납제 | **( ) 9,900원/1개월 기본건수 100건/월, 초과건당 70원**  **( ) 39,000원/1개월 기본건수 700건/월, 초과건당 60원**  **( ) 10만원/1개월 기본건수 2,000건/월, 초과건당 50원**  **( ) 20만원/1개월 기본건수 4,000건/월, 초과건당 48원** | | |
| **전산개발**  **관련사항** | 서비스 제공기간 | | | 하기 신청일자로부터 12개월 | |
| 개발담당자 | | | **회사명 / 부서명** | ㈜가비아씨엔에스 |
| **직책 성명** |  |
| **연락번호/핸드폰** |  |
| **전자메일** |  |

**※ 상기와 같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며 별첨의 이용약관 중 신청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  |  |
| --- | --- |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신청서 직인날인본 (약관포함)  - CI/DI제공신청서  - 취약점 체크리스트  **[제 출 처]**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7  NICE평가정보 8층 DI사업본부  DI사업실 윤정훈 매니저  Tel. 02-2122-4831, jeonghun27@nice.co.kr | **[신 청 자]**  신청일자 : 년 \_\_\_월 \_\_\_일  **회 사 명 :**  **대표자명 : (인)**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

**\* 주의 1.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 및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  |  |
| --- | --- | --- |
| 나이스아이핀 서비스 이용약관 | | |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NICE평가정보주식회사(이하 "NICE"라 함)와 NICE가 제공하는 나이스아이핀 표준 인증창 서비스, 마이핀 서비스와 대체키 발급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함) 사이에 “서비스” 제공⋅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이스아이핀”: NICE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서 사용자 식별 목적으로 개인 사용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하는 영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아이핀아이디 또는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진 고유의 식별번호(식별번호의 경우 통상 아이핀 번호와 같은 의미임)  2.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하는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3. “아이핀아이디”: 아이핀 인증을 위해 개인 사용자 본인의 선택 및 신청에 의해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영문 알파벳 혹은 숫자의 조합  4. “비밀번호”: 아이핀아이디와의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개인 사용자에게 부여되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  5. “나이스마이핀”: NICE가 오프라인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개인 사용자의 신원확인을 거쳐 발급하는 13자리의 번호  6. “마이핀(My-PIN)”: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제공하는 일상생활 주민번호 대체번호로서 13자리로 구성  7. “개인 사용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개인으로 신원확인을 거쳐 서비스의 아이핀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신청해 발급 받은 자  8. “중복가입확인정보(D.I)”: 나이스아이핀, 마이핀에서 특정 회원사 내부 개인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달하는 64byte의 문자열  9. “연계정보(C.I)”: 나이스아이핀, 마이핀에서 법률적으로 개인의 중복 여부를확인하기 위해 전달하는 88byte의 문자열  10. “대체키”: “중복가입확인정보” 또는 “연계정보”를 통칭하여 일컫는 용어  **제3조(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NICE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 사용자의 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이용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대체키 발급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NICE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NICE는 서비스를 이용할 이용담당자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지정담당자 이외의 제3자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④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는 본 약관에서 허용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이용자의 임직원, 대리인, 수임인, 수급인 기타 이용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모든 자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4조(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①본 약관은 이용자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의 대표자 날인이 있는 신청서와 함께 NICE에 제출하고 NICE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NICE는 계약의 성립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등 부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NICE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NICE와 이용자는 대표자의 날인이 있는 약관 및 신청서 사본 또는 원본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본 계약은 NICE와 이용자 간에 서비스 신청이 체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서비스 요청 및 결과의 제공)** ①이용자는 NICE가 제공하는 정보를 인터넷통신 또는 별도 합의된 안전한 방법을 이용하여 조회한다.  ②NICE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로 한다. 단, 대체키 발급 서비스의 경우 NICE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중복가입확인정보 또는 연계정보를 기본으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신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송신은 송신 측이 수신은 수신 측이 각자 부담한다.  **제6조(수집 제한)**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등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법률에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7조(양도 금지)** ①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NICE의 동의가 있거나, 상속, 법인 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②전항에 의하여 사용 권리를 승계한 자는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NICE에 통지한 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서비스 이용과 중단)** ①NICE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지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NICE는 서비스가 중단된 후, 또는 중단될 것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아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중단 기간 및 복구 예정 시각  2. 서비스 중단의 원인  **제9조(서비스 이용 수수료)** ①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별지 신청서의 내용에 따른다.  ②NICE는 서비스 이용 수수료 조건을 서비스 신청 시 이용자에게 서면 등으로 제공한다.  ③NICE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이라도 조달원가의 변경 또는 서비스 관련 정부기관, 제휴사 등의 지침, 명령, 지시, 요구 등에 따른 서비스 변경 사항 발생시 이용 수수료 또는 서비스 방식을 “이용자”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이 적용되는 시점까지 변경 합의가 없는 경우 “이용자” 또는 “NICE”는 서비 |  | 스를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수수료의 납부)** ①이용 수수료는 수수료 청구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용 수수료는 자동이체, 은행 지로,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방문 납부 등의 방식 중 NICE와 이용자가 합의한 형태로 납부한다.  ③NICE는 이용자가 납입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5%, 납입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용수수료의 2%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④이용자가 납입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NICE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⑤이용 수수료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입 담당자 변경의 통지 등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의 해태로 인한 손해 발생의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11조(계약의 유효기간)** ①본 계약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  ②본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명시적인 서비스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12개월간 자동 연장된다. 단, 대체키 발급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서비스의 처리 목적이 지속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①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영업의 중단·양도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된 경우 계약 해지 20일 전까지 NICE에 등기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해지일(선납계약의 경우 해지월)까지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다음의 각호에 따라 모두 정산함으로써 기납부한 서비스 이용료를 환급받고 해지할 수 있다.  1.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선납계약의 경우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일수(선납계약의 경우 잔여 월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 후 환급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건수에 따른 이용금액이 1호에 따른 산법의 정산액 보다 많은 경우 이용기간 동안 사용한 이용건수에 따라 정산하고 잔여 이용일수(선납계약의 경우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 후 환급한다.  3. 기본요금이 책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해지일까지의 일 평균 이용건수를 계약기간으로 환산하여 총 예상 이용수수료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정산 후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②NICE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이용자에게 해당 사유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고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폐업 또는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이용자”가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이용자”가 이용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기타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약관이 해지되는 경우 NICE는 이용자에게 NICE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판단의 독자성)** ①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에 근거한 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NICE는 신용정보주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자, 신용정보업자 등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는 보증하지 않는다.  **제14조(적용법률과 관할법원)** NICE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5조(기타 사항)** ①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한다.  ②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협의, 합의, 동의, 통지, 보고, 전달, 청구 혹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구속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③본 약관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상호 협의하여 첨부할 수 있다.  ④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NICE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처리 등의 목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관련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약관의 개정)** ①NICE는 계약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②이용 기간 중 약관의 개정이 있는 경우 NICE는 약관의 내용을 약관 시행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고지한다.  ③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있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약관 시행일 15일 전까지 이를 NICE에 고지하면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약관을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부칙**  본 계약은 서비스의 신청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계약서 또는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 |

|  |  |
| --- | --- |
| NICE아이디 안심본인인증서비스 이용약관 | |
| **제1조(목적)** 본 약관은 NICE평가정보주식회사(이하 "NICE"라 함)와 NICE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본인확인, 공인인증서 인증,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함) 사이에 “서비스” 제공⋅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안심본인인증서비스”: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거래 당사자의 본인 여부 또는 입력한 정보의 일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2.“휴대전화 본인확인”: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정보,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정보 등의 일치 여부를 이동통신사 또는 이동통신사의 대행사를 통해 확인한 후 단문메시지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 이하 “SMS”라 한다)를 통해 인증번호를 확인하거나 별도의 본인확인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지문 확인, 사전에 본인이 설정한 번호(PIN) 일치 여부 확인,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이통사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단, 별도의 합의에 따라 “SMS”는 장문메시지서비스(Long Message Service : 이하 “LMS”라 한다)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일부 휴대전화 번호는 기술적 한계 또는 정책 등에 따라 휴대전화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다.  3.“공인인증서 인증”: 개인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의 비밀번호 확인을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4. 기타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써 의미의 정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별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그 용어의 정의를 상호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제3조(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NICE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 사용자의 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이용자는 개인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서비스 접근 권한 등이 타인 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인한 유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NICE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관계 법령, 고시, 감독규정, 유권해석, 본인확인기관이 정한 대체수단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 제한 등 서비스 관련 각종 규제상 허용되는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이 허용되는 목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의무를 진다.  ④이용자의 임직원, 대리인, 수임인, 수급인 기타 이용자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모든 자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⑤이용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취득,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동의 취득, 개인정보 취급 위탁사실의 고지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NICE는 “이용자”의 “서비스”이용과 관련된 계약 내용,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의 정보를 “서비스” 관련 대행업무를 위탁한 본인확인기관 및 본인확인기관의 대행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⑦”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정하거나 NICE와 합의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⑧”이용자”는 “서비스”를 일괄전송이나 batch 방식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동의 등의 요건을 사전에 모두 득하여야 하며, NICE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별도의 서면으로 보증해야 한다.  ⑨”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법률요건에 따라서 동의를 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보관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⑩NICE 및 NICE에 “서비스” 관련 정보를 공급하는 이동통신사(대행사 포함), 공인인증기관 등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의 부정확성이나 오류, 사전 통보 없는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이용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①본 계약은 이용자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용자의 대표자 날인이 있는 신청서와 함께 NICE에 제출하고 NICE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②NICE는 계약의 성립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등 부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NICE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NICE와 이용자는 대표자의 날인이 있는 신청서 및 약관 사본 또는 원본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본 계약은 NICE와 이용자 간에 서비스 신청이 체결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서비스 요청 및 결과의 제공)** ①이용자는 NICE가 제공하는 정보를 인터넷통신 또는 전용회선 기타 안전성이 인정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조회한다.  ②NICE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은 정보의 일치 여부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부가적으로 본인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③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통신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송신은 송신 측이 수신은 수신 측이 각자 부담한다.  **제6조(수집 제한)**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등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법률에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7조(양도 금지)** ①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NICE의 동의가 있거나, 상속, 법인 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②전항에 의하여 사용 권리를 승계한 자는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NICE에 통지한 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서비스 이용과 중단)** ①NICE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NICE는 다음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제반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⑤NICE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처리 등의 목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관련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약관의 개정)** ①NICE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②이용 기간 중 약관의 개정이 있는 경우 NICE는 약관의 내용을 약관 시행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고지한다.  ③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있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약관 시행일 15일 전까지 이를 NICE에 고지하면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약관을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부칙**  본 계약은 서비스의 신청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계약서 또는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 | 2.이동통신사(대행사 포함), 공인인증기관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3.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 또는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수행하는 업데이트, 시스템 교체, 정기점검 등으로 인한 중단  ③NICE는 서비스가 중단된 후, 또는 중단될 것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용자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서비스 중단 기간 및 복구 예정 시각과 서비스 중단의  원인을 통지해야 한다.  ④NICE는 서비스 관련 부정사용이 의심되거나 사전 합의되지 않은 대량 이용이 확인될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⑤NICE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변경 및 공지사항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제시한 담당자의 전자메일 또는 휴대폰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 이용 수수료)** ①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별도 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②NICE는 서비스 이용 수수료 조건을 서비스 신청 시 이용자에게 서면 등으로 제공한다.  ③NICE는 서비스 이용기간 중이라도 조달원가의 변경 또는 서비스 관련 정부기관, 제휴사 등의 지침, 명령, 지시, 요구 등에 따른 서비스 변경사항 발생시 이용 수수료 또는 서비스 방식을 “이용자”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사항의 적용 시점까지 변경 합의가 없는 경우 “이용자” 또는 “NICE”는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수수료의 납부)** ①이용 수수료 납부 방식은 수수료 청구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②이용 수수료는 자동이체, 은행 지로,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방문 납부 등의 방식 중 NICE와 이용자가 합의한 형태로 납부한다.  ③NICE는 이용자가 납입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5%, 납입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용수수료의 2%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④이용자가 납입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NICE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⑤이용자는 이용 수수료의 납부와 관련하여 납입 담당자 등의 변경시 통지 의무가있으며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또한, 이의 해태로 인한 손해 발생의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11조(계약의 유효기간)** ①본 계약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  ②본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명시적인 서비스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내용으로 12개월간 자동 연장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①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영업의 중단·양도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불필요하게 된 경우 계약 해지 20일 전까지 NICE에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지신청서와 함께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해지일(선납계약의 경우 해지월)까지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다음의 각호에 따라 모두 정산함으로써 기납부한 서비스 이용료를 환급받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1.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선납계약의 경우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이용일수(선납계약의 경우 잔여 월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 후 환급한다.  2. 1호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이용건수에 따른 이용금액이 1호에 따른 산법의 정산액 보다 많은 경우 이용기간 동안 사용한 이용건수에 따라 정산하고 잔여 이용일수(선납계약의 경우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 후 환급한다.  3. 기본요금이 책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해지일까지의 일 평균 이용건수를 계약기간으로 환산하여 총 예상 이용수수료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정산 후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②NICE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이용자에게 해당 사유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고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폐업 또는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이용자”가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이용자”가 이용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동통신사 또는 대행사 등 외부기관과 “NICE”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5.기타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③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NICE는 이용자에게 NICE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판단의 독자성)** ①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에 근거한 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NICE는 신용정보주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자, 신용정보업자 등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는 보증하지 않는다.  **제14조(적용법률과 관할법원)** NICE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5조(기타 사항)** ①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한다.  ②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협의, 합의, 동의, 통지, 보고, 전달, 청구 혹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구속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③본 약관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상호 협의하여 첨부할 수 있다.  ④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음페이지 계속(1/2) - |